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 범위)
- 제 3 조 (규칙의 적용)
- 제 4 조 (타 규정 또는 규칙과의 관계)
- 제 5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합작투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

- 제 6 조 (해외부패방지 의무)
- 제 7 조 (파트너에 대한 실사)
- 제 8 조 (합작투자 및 컨소시엄 계약)
- 제 9 조 (합작투자의 부패방지)
- 제 10 조 (컨소시엄의 부패방지)
- 제 11 조 (기존 프로젝트 참여시의 조치)

제 3 장 신고 및 처벌

- 제 12 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제 13 조 (처벌 및 인센티브)

부 칙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이하 “규칙” 이라고 함)은 해외부패방지법준수를 위한 규정(이하 “해외부패방지규정” 이라고 함) 제11조에 의거하여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함), 회사가 구성원인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Consortium),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 파트너(Partner)(이하 “파트너” 라고 함)의 해외부패방지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에 적용된다.

1. 회사와 하나 이상의 파트너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법인격을 가진 합작투자회사.
2.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나, 회사와 하나 이상의 파트너간의 계약에 따라 공동의 목적 하에 경영과 손익을 분담하는 비법인 합작투자.
3. 특정 프로젝트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와 파트너간 체결되나, 각 사가 각자의 업무범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손익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컨소시엄.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1. 회사가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합작투자에 대하여 통제권,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권, 그 밖의 실질적인 경영참여권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2. 제안 및 예기되는 합작투자행위가 연구, 개발 및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업 또는 사업기회의 초기단계에 국한되며, 발주처 또는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어떠한 보수 또는 보상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조 (규칙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회사, 자회사 및 해외 지사의 임원, 직원 등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상시, 정기 또는 임시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임직원” 이라 함) 중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등 거래에 관여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이하 “합작투자 담당 임직원” 이라 함)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칙의 일부 또는 부분적 적용이나 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특별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 (타 규정 또는 규칙과의 관계) ① 이 규칙과 해외부패방지규정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또는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② 이 규칙과 회사 내 다른 규정 또는 규칙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합작투자이면서 협력업체인 경우에는 이 규칙뿐 만 아니라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도 함께 적용을 받는다.

제5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이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해외부패방지규정의 정의에 의한다.

1. “**공개 정보**”는 대중매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 가능한 정보로서, 정관, 사업자등록증, 연례 보고서,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 신용평가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2. “**합작투자**”는 이 규칙의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합작투자회사 또는 비법인 합작투자를 말한다.

제 2 장 합작투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

제6조 (해외부패방지 의무) 합작투자 담당 임직원은 합작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부패방지규정 및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파트너가 회사의 해외부패방지규정 또는 그 규정의 상세규칙, 그 밖의 동등한 규정의 준수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파트너에 대한 실사) ① 합작투자 담당 임직원은 파트너와 합작투자 계약 또는 컨소시엄 계약 (이하 “합작투자/컨소시엄 계약”이라 함)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트너에 대한 실사의 목적은 파트너가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절차, 규정 또는 프로그램(Program)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가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에 대하여 적절히 교육받고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함에 있다.

1.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가 파트너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
2. 합작투자/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및 필요성
3. 파트너에 대한 기본정보 (설립지, 주사무소 소재지, 주주 또는 소유자, 주요 경영진)
4.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파트너의 임직원 중 외국공무원이 있는지 여부 또는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정부가 파트너의 주주 또는 소유자이거나 파트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5. 파트너, 파트너의 임직원, 자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주주 또는 소유자 또는 파트너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제3자가 지난 3년간 뇌물수수, 사기, 횡령 등의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함)에 관여하였거나,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수사, 조사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6. 파트너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7. 파트너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와 공동으로 사업 또는 사업기회를 추진함에 있어, 파트너,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을 대리 또는 대행할 제3자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사용할 예정인지 여부
- ② 합작투자 담당 임직원은 실사 수행 과정에서 파트너로 하여금 파트너에 대한 질문서를(별지 제1호 서식, Questionnaire for Joint Venture and Consortium Partners)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파트너와 관련된 공개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야 한다.
-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사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파트너에 대한 질문서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파트너에 대한 실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파트너에 대한 심화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사 완료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 합작투자 담당 임직원은 합작투자/컨소시엄 계약 체결 전 파트너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⑤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작투자에 관한 구체적 권리의무가 아직 규정되지 아니한 초기 단계에서 파트너와 상호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의 경우, 해당 약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실사 완료 전 해당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약정 체결 후에는 본 조에 따른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향후 구체화될 합작투자 또는 파트너의 권리의무
 2. 파트너에 대한 실사의 결과에 따른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권
- ⑥ 파트너에 대한 실사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안된 파트너 및 그 모회사의 공개정보 또는 평판도 조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또는 평판도가 낮은 파트너의 경우에 비하여,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었거나 평판도가 높은 파트너의 경우 실사는 보다 간략해질 수 있다.

제8조 (합작투자 및 컨소시엄 계약) ①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파트너와 체결하는 합작투자/컨소시엄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잠재적인 뇌물공여 등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부패방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파트너와 체결하는 합작투자/컨소시엄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다만, 컨소시엄 계약의 경우, 4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불가피하게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파트너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의무 및 위반행위 통지의무

파트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합작투자/컨소시엄 계약 또는 그 밖의 관련 계약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을 준수한다.

나아가, 파트너, 파트너의 임직원, 자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주주 또는 소유자 또는 파트너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제3자가 합작투자/컨소시엄 계약 또는 그 밖

의 관련 계약 또는 행위와 관련한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수사, 조사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피소된 경우, 파트너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서면 통지해야 하는 의무

2. 파트너와 외국공무원의 관련성.

(파트너에 대한 질문서를 통해 공개된 사항을 제외하고) 파트너의 임직원은 외국 공무원이 아니며,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정부가 파트너의 주주 또는 소유자이거나 파트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의무

3. 부패방지조항의 위반과 효과.

파트너가 계약상의 부패방지조항 또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의 계약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4. 감사권 및 정보공개권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의 감사권 및 발주처,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합작투자의 부패방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합작투자의 설립 관련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1. 해외부패방지규정과 관련된 규칙의 도입 및 실시.

합작투자는 해외부패방지규정,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 또는 이 규칙과 유사한 수준의 규정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도입 및 실시.

합작투자는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준법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의 조사.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합작투자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4. 문서 보관 및 감사.

합작투자 계약의 종료로부터 5년간 (단, 합작투자회사의 경우는 해당 법인 설립지의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합작투자에 관한 기록, 합작투자의 업무 수행 및 정부기관, 외국공무원, 제3자 대리인,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 지급을 포함한 경비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합작투자는 적절한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기록을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파트너의 합작투자 계약상의 부패방지조항 및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 후 합작투자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파트너는 상기 감사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감사의 방법, 범위, 기간 등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의 재량에 의한다.

5. 공개의 권리.

회사는 발주처, 관할권을 가진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

6. 교육.

회사는 합작투자의 임직원이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컨소시엄의 부패방지)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의 경우,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파트너의 운영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의 염려가 없으면서 특별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컨소시엄 파트너 또는 컨소시엄 계약과 관련하여 이 규칙의 제7조 또는 제8조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존 프로젝트 참여시의 조치) 특정 프로젝트(Project)의 사업주 또는 투자자 또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주주에 의하여 해당 프로젝트에의 입찰, 투자 등의 참여를 제안 받는 경우,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상기 사업주, 투자자 또는 주주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실사의 적절한 수준 및 관련 계약의 부패방지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신고 및 처벌

제12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① 임직원은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신의 상급자, 주관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임직원은 외국공무원으로부터의 뇌물공여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대신 주관부서에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보고할 수도 있으며, 주관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임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처벌 및 인센티브) 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② 주관부서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및 포상에 대해서는 상벌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